

광주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605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60511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5596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변론종결 2021. 6. 18.

판결선고 2021. 7. 16.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5596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8.자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아홉째 줄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2호증”을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으로 고침.
- 제7면 아래에서 넷째 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기초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3, 10, 11, 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송파구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고침.
- 제8면 첫째 줄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원, 서울 송파구 K아파트 L호에 대한 23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합계 330,000,000원의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C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약 4,329,866,352원(= 주식 137,334주 × 1주당 순자산가치 31,528원) 상당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공인회계사 M가 작성한 위 회사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을 제23호증)에 의하면, 2015. 12월말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31,528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갑 제7, 8호증,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위 회사의 재무상태는 E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할 상태로 좋지 않았으며,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N 및 O로 각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②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렵고, 위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0. 14.경 위 회사의 의뢰에 따라 위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정확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감사나 검토 등이 없이 작성되었는바, 위 보고서에 기재된 주당 순자산가치액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위 회사는 2019. 12. 2. 결국 해산간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은 용이하게 변제받거나 환가할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선, 판사 김효진, 판사 이지영

별지